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가단536155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4 선고 2023나4978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가단5361550 판결

전문

원고A 유한회사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 담당변호사 백승배

변론종결 2023. 6. 21.

판결 선고 2023. 8. 9.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5. 체결된 증여계약을 11,086,00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086,0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 1) C은 2017. 9. 13.경 D 주식회사와 신용카드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1. 24.경 D 주식회사로부터 11,000,000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
- 2) D 주식회사는 2019. 3. 6. C에 대한 채권을 E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E 주식회사는 2019. 7. 19.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 3) 원고는 2020. 4. 17.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229295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C은 원고에게 8,676,912원 및 그 중 7,870,733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20. 5. 12. C에게 송달되었고, 2020. 5. 27.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증여계약

C은 2018. 4. 5. 자녀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4. 5. 접수 제2711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현황 등

- 1)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F조합의 채권최고액 7,8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8. 5. 28.자 해지를 원인으로 2018. 5. 29.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2) G 주식회사는 2018. 5.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8. 7. 23.자 해지를 원인으로 2018. 7. 25.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3) H 주식회사는 2018. 7.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의 재산상태 등

1)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유일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D 주식회사에 대한 10,083,000원의 대출금 채무와 F조합에 대한 2,357,120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다.

2) 2021. 4.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6,200만 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발생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등 참조).

C은 D 주식회사와 F조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C이 자녀들 사이의 상속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이 피고에게 경제적 곤란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채무 연체가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C의 채무를 면탈하고자 하는 악의가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와 C의 관계, C의 재산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가액배상)과 취소의 범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증여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F조합의 채권최고액 7,8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이 증여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위 증여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취소 및 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2021. 4. 기준 시가가 62,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가액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F조합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2,357,120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59,642,880원(= 62,000,000원 - 2,357,120원)이다. 원고의 피담보채권액은 8,676,912원 및 그 중 7,870,733원에 대하여 2020.

5. 13.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3. 6. 21.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인 2,936,686원의 합계 11,613,598원이므로, 손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더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11,613,598원 중 원고가 구하는 11,086,003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11,086,00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1,086,0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신유리

별지